

## 동해어업관리단, 살오징어 불법포획 어선 검거 -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 중 오징어 포획·소지 어선 적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6일 12시 50분경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 17해리 해상에서 금지기간 중 살오징어를 소지하고 있는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조업 중 포획된 오징어 51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건조하여 보관하던 중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에 의해 검거 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을 받게 된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오징어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만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지도·점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살오징어 금지기간 위반 및 어린 오징어(외투장\* 15cm 이하) 불법 포획·유통 행위에 대해육·해상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 외투장 : 외투막(오징어의 눈과 다리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의 길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정윤혁 계장(☎ 051-410-10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사진







